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7
------	-----

2023.03.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월 12일, 박성연 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김영환)

1. 제안이유

-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의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 나. 기존 관광약자의 정의에서 중복되는 관광취약계층을 제외함(안 제2조제2호)
- 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보완함(안 제3조)
- 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 환경조성 등 시책 마련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 현황

- 서울시는 경제·사회적 제약 등으로 여행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여행기회를 지원하고 여행업계에는 여행상품 운영비 지원하는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2023년 예산 800백만원) 중임.

(2) 정의규정(안 제2조)

-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기존 ‘관광약자’의 범위에서 ‘관광취약계층’을 제외하고자 함. 이는 ‘관광취약계층’대상을 장애, 노령, 임신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정보접근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관광약자를 --.</p> <p>2. “관광약자”란 장애, 노령,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 현행 조례는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을 관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 개정(2020.9.)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 현재 각 시도마다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용어도 상이한 바, 법령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관광약자’를 ‘관광취약계층’의

개념에 포함한다면 법령의 체계와 지원 범위에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 하도록 구체화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 관광 활동 -----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

(4) 무장애 관광지원(안 제5조의2)

-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지원 대상을 ‘관광약자’ 에서 ‘관광취약계층’ 으로 규정함. 개정안의 취지는 ‘관광취약계층’ 에 ‘관광약자’ 를 포함시켜 무장애 관광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나, 법령에서 규정된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경우 관련 법령과의 용어체계의 정합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무장애 관광지원 대상에 포함된 ‘관광취약계층’ 으로 개정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사용되는 등 용어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자구 수정 등

- 그 밖에 조문내용 중 “관광활동” 을 “관광 활동” 으로 “활동지원” 을 “활동 지원” 으로 “하는데” 를 “하는 데” 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그러나 “관광활동” 과 “활동지원” 등은 법령, 조례, 기본계획·방침서 등에서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적음.

- 다만 안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의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가 같은 조례 제6조로 개정(2019.7.)되었으나 일괄정비되지 않은 사항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개정(2013.5.)되었으나 동 조례안 제정 당시부터 오류가 발생한 사항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정의는 법령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광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타 조례 개정 후 일괄정비되지 않은 사항 등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

하고자 수정함.

나. 수정의 주요 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보완함(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관광약자를”을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 활동”을 “관광활동”으로 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관광 활동”을 “관광활동”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6호 중 “활동 지원에”를 “활동지원을 위해”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을 “(장애인 관광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 활동”을 “관광활동”으로, “활동 지원”을 “활동지원”으로 한다.

안 제5조의2 중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약자”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중 “활동 지원”을 “활동지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align="center"><u>서울특별시</u> <u>관광취약계층을 위한</u> <u>관광 활동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u> 여행 기회를 <u>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u>규정</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 align="center"><u>서울특별시</u> <u>관광취약계층을 위한</u> <u>관광 활동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 계층의 -----</u> -- <u>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u> 규정함으로써 <u>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p> <p>1. ----- ----- <u>한</u> <u>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관광약자를 -----</u></p>	<p align="center"><u>서울특별시</u> <u>관광취약계층을 위한</u> <u>관광 활동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41조의3에 따른 사람</u>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p>	<p>--.</p> <p>2. “관광약자”란 장애, 노령,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3. ----- ----- ----- 하는 데 ----- 관광 활동-----.</p> <p>제3조(책무) ----- ----- 관 광 활동 -----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p> <p>제4조(관광지원기본계</p>	<p>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p>3. ----- ----- ----- 관광 활동-----.</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p> <p>제4조 (수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1. ~ 5. (생략)</p> <p>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u>활동지원을 위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제5조(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u>관광활동</u>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p>	<p>획)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활동 지원에</u> ----- ----- -----</p> <p>②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 ----- -----.</p> <p>제5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 ----- ----- <u>관광</u> <u>활동</u> ----- ----- <u>활동 지원</u>-----</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 ----- <u>활</u> <u>동지원을 위해</u>-----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① ----- ----- ----- <u>관광활동</u> ----- ----- <u>활동지원</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성·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제8조(표창) ----- -----<u>활동 지원</u>-----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p> <p>제9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 ----- -----.</p>	<p>-.</p> <p>제8조(표창) ----- -----<u>활동지원</u>----- ----- ----- ----- -----.</p> <p>제9조(시행규칙) (수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을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로 하고, 같은조제3호 중 “하는데”를 “하는 데”로 한다.

제3조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 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생략)</p> <p>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 하는 데 ----- -----.</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p> <p align="center">-</p>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생략)

1. ~ 6. (생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표창)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